##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12 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김태선·박홍배·맹성규

정준호 • 이훈기 • 김태년

안호영 · 김남근 · 이기헌

박균택 • 권칠승 • 박 정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각각의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
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조의3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3(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	제2조의3(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
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생	의 수립ㆍ시행) ①ㆍ② (현행과
략)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
	수립하는 경우에는 「국민건강
	증진법」 제4조에 따른 국민건
	강증진종합계획 및 「정신건강
	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
	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
	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
	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
	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
	도록 하여야 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